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125
----------	-------

발의연월일 : 2026. 4. 6.

발 의 자 : 서미화 · 이학영 · 김준혁
이주희 · 이성윤 · 조계원
박수현 · 김선민 · 추미애
김한규 · 김예지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에게 지급하는 국고보조금 중 경상보조금의 1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5% 이상은 청년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의 구체적인 사용용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고보조금 중 선거보조금의 경우 여성·장애인·청년추천보조금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경상보조금에서는 여성·청년 외에 장애인정치발전을 위한 용도를 규정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고,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하여 경상보조금의 일정 비율을 장애인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당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의 5% 이상을 장애인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장애인정치발전 경상보조금의 구체적인 사용

용도를 규정하여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확대하는 등 장애인정치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2항).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청년정치발전을 위하여”를 “청년정치발전을 위하여, 100분의 5 이상은 장애인정치발전을 위하여”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여성정치발전”을 “여성정치발전 및 장애인정치발전”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

- 가. 여성정책 관련 정책개발비
- 나. 여성 공직선거 후보자 지원 선거관계경비
- 다. 여성정치인 발굴 및 교육 관련 경비
- 라. 양성평등의식 제고 등을 위한 당원 교육 관련 경비
- 마. 여성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정치활동 지원 관련 경비
- 바. 그 밖에 여성정치발전에 필요한 활동비, 인건비 등의 경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경비

2. 장애인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

- 가. 장애인정책 관련 정책개발비
- 나. 장애인 공직선거 후보자 지원 선거관계경비

- 다. 장애인정치인 발굴 및 교육 관련 경비
- 라. 장애인·비장애인 평등의식 제고 등을 위한 당원 교육 관련 경비
- 마. 장애인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정치활동 지원 관련 경비
- 바. 그 밖에 장애인정치발전에 필요한 활동비, 인건비 등의 경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경비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4. 양성평등의식 제고 등을 위한 당원 교육 관련 경비
- 5. 여성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정치활동 지원 관련 경비
- 6. 그 밖에 여성정치발전에 필요한 활동비, 인건비 등의 경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경비

원 선거관계경비

- 다. 여성정치인 발굴 및 교육 관련 경비
- 라. 양성평등의식 제고 등을 위한 당원 교육 관련 경비
- 마. 여성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정치활동 지원 관련 경비
- 바. 그 밖에 여성정치발전에 필요한 활동비, 인건비 등의 경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경비

2. 장애인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

- 가. 장애인정책 관련 정책개발비
- 나. 장애인 공직선거 후보자 지원 선거관계경비
- 다. 장애인정치인 발굴 및 교육 관련 경비
- 라. 장애인·비장애인 평등의식 제고 등을 위한 당원 교육 관련 경비
- 마. 장애인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정치활동 지원 관

<p>③ · ④ (생략)</p>	<p><u>런 경비</u> <u>바. 그 밖에 장애인정치발전에 필요한 활동비, 인건비 등의 경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경비</u> ③ · ④ (현행과 같음)</p>
-------------------	---